

자 연 보 존(自然保存)

姜 永 善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教授>

우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삼천리금수강산(三千里錦繡江山)이라고 해서 적어도 동양에서는 가장 산천(山川)의 풍경(風景)이 아름다운 나라로 자타가 공인했던 것이다. 진실로 가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겠지만 금강산(金剛山)의 풍경(風景)같은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이나 영국의 전국토를 돌아봐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절경(絶景)이라고 하겠다. 또한 개의 산(山)을 답사(踏査)함으로써 그 나라의 식물의 분포상(分布相)을 그대로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제주도(濟州島) 한라산(漢拏山)을 내놓고는 세계(世界) 어느 곳에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강토(江土)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人口)의 증가, 생활의 궁핍, 그리고 자연애호(自然愛護)에 대한 마음의 결려등으로 인하여, 산림은 남벌을 당하고, 귀중한 동물은 서식처(棲息處)를 잃었으며, 산천(山川)은 황폐(荒廢)의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연(自然)을 보호(保護)하며, 나아가서는 어떠한 방법(方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황폐(荒廢)된 우리의 자연(自然)을 복구할 것이며, 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어떻게 자연(自然)을 보호(保護), 관리(管理), 이용(利用)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연(自然)의 황폐(荒廢)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자에 와서는 온 세계적(世界的)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先進)인 나라에 있어서는 정부(政府)와 국민(國民)이 힘을 합해서 이를 적극 방지하고 있지만, 후진(後進)인 나라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自然)의 파괴가 심함을 본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후자(後者)에 속하여 정부(政府)에서는 어느 정도 자연보존(自然保存)에 힘을 쓰고 있지만 민중(民衆)과의 호흡(呼吸)이 맞지 못하여 결과적(結果的)으로 우리의 강산(江山)은 몇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황폐(荒廢)되고 말았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인구(人口)는 욱심히 증가하고 문명(文明)이 발달하는데 부수되어 주택(住宅), 도로(道路), 공장(工場), 댐, 비행장(飛行場) 등등의 설치(設置)가 갑자기 늘게 되어 자연(自然)이 파괴될 기회는 불가피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최소한도로 막는다는 것이 곧 자연보존(自然保存)이라고 하겠다. 물론 사람이 이 지구(地球)위에 나타나기 시작한 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自然)을 이용(利用)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앞으로도 자연(自然)을 충분히 이용(利用)을 해야 우리가 잘 살수가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自然)을 보호(保護)하고, 잘 관리(管理)를 하지 못하면서 이용(利用)만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자연(自然)은 완전(完全)히 황폐(荒廢)가 되어 우리의 자손(子孫)들은 자연(自然)을 이용(利用)할 기회(機會)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다나 개천의 물고기를 잡아먹기만 하면 얼마 않아서 물고기는 멸종(滅種)이 될 것이요, 산의

나무를 베기만 하면, 산은 벌거숭이가 되어 나무를 이용(利用)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땅속에 물을 붙들 힘을 잃게 됨으로 해서 조발(早魃)과 수해(水害)에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상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에 있어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해 그대로 방치해 온 것은 아니다. 1961년 정부(政府)에서는 문교부(文教部)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을 설치하고 여기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를 두기로 했다. (현재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로 이관(移管)).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第3분과(分科))에서는 우리 강토(江土)에서 특히 오래 오래 보존(保存)해야 할 중요한 지역(地域)을 선정,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거해서 보호지구(保護地區)로써 지정(指定)을 하게 되었다. 여기에 들게 된 지역(地域)의 중요한 것은 강원도(江原道)의 설악산(雪嶽山), 제주도(濟州島)의 한라산(漢拏山) 그리고 전라남도(全羅南道)에 속하는 홍도(紅島)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自然)이 비교적 그대로 보존(保存)되어 있는 곳을 손꼽는다면 그래도 이 세 개 지역(地域)을 빼놓고는 다른 데서는 찾아 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정부(政府)에서 미리 손을 쓴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덕택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뒤 1962년 7월 미국 시애틀(Seattle)에서 열린 第2회 세계국립공원회의(世界國立公園會議)의 자극을 받아 1963년 우리나라의 과학자(科學者)들은 손을 모아 이 나라의 자연보존사업(自然保存事業)을 돕기 위한 민간학술단체(民間學術團體)인 한국자연보존협회(韓國自然保存協會)를 조직(組織)하기에 이르렀다.

자연보존사업(自然保存事業)을 추진하는 데는 어떤 지역(地域)의 가치성(價値性)을 인정하기에 앞서 그 지역(地域)의 자연(自然)에 대한 기초조사(基礎調査)를 하는 것이 순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협회(本協會)의 멤버들은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협조(協助)해서 앞에서 설명한 설악산(雪嶽山), 한라산(漢拏山), 홍도(紅島) 등지에 대해 일차적(一次的)인 기초조사(基礎調査)를 마쳤으며, 또한 미국 학계(學界)의 도움을 받아, 1966년에서 1968년에 이르는 2개년 동안 우리나라 휴전선(休戰線)(DMZ)인접지역(地域) 일대(一帶)에 걸쳐 생물(生物), 지질환경(地質環境)(물, 온도, 습도등)등의 생태학적(生態學的)인 기초조사(基礎調査)를 광범위하게 추진해 왔다. 한편 건설부(建設部)에서는 수년전(數年前)부터 국립공원설치(國立公園設置)에 관한 업무(業務)를 장악하고, 우선 우리나라의 국립공원법안(國立公園法案)을 작성해서 1967년 국회(國會)를 통과시켰으며, 1968년에는 국립공원(國立公園) 第1號로 지리산(智異山)을 설정하여, 여러 가지로 그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산림보호(山林保護)에 관해서는 농림부(農林部) 산림청(山林廳)에서 그 업무(業務)를 담당하고 있다.

자연보존사업(自然保存事業)에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향이 있다고 본다.

그 중의 하나는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한 기초연구조사(基礎研究調査)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토(江土)의 전체에 걸쳐서 자연(自然)에 대한 기초연구(基礎研究)가 완전히 되어 있지 못하기에, 어떠한 사업(事業)을 추진함에 있어도 아쉬운 점이 많다. 지리산(智異山)을 국립공원(國立公園) 第1號로 선정하는데 있어도, 다른 지역(地域)을 제치고 이곳을 가장 먼저 국립공원(國立公園)으로 정하는 이유가 과학적(科學的)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지구(保護地區)나 천연기념소(天然記念所)를 선정하는데도 마찬가지이다.

정부(政府)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한국자연보존협회(韓國自然保存協會)와 같은 단체(團

體)를 육성(育成)하며, 이용(利用)하여 우리나라 전역(全域)에 걸친 자연(自然)의 기초연구조사(基礎研究調査)를 점진적으로라도 추진하고 그 데이터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자연보호(自然保護)에 관해 국민대중(國民大衆)을 계몽(啓蒙)하는 문제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고등학교(高等學校) 교과서(教科書)의 기초(基調)가 되고 있는 BSCS에까지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한 내용을 많은 비중으로 집어넣고 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山)이나 들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이나 열매가 달린 나무가지를 꺾고 동물을 납획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 나라에서 그러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 사람도 미국에 가서 국립공원(國立公園)의 여러군데를 돌아보았지만, 무단히 나무를 꺾고 동물을 잡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공원(公園)의 길을 걸어 가면 다람쥐나 새들이 사람을 줄줄 따라온다. 호수(湖水)나 개울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루 종일 낚시질을 해서 잡은-고기를 저녁때가 되면 전부 썸을 한 뒤 도로 물 속에다 넣어주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문명(文明)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연(自然)을 애호(愛護)할 줄 알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간(人間)들이 자연(自然)속에서 오래오래 자연(自然)을 이용(利用)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대중(國民大衆)에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알리어 계몽(啓蒙)을 해야된다. 책자나 영화(映畫), 라디오, TV, 강연회(講演會)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것도 좋겠고, 또 가정교육(家庭教育)이나, 나아가서는 교과서(教科書) 같은데 넣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하면 더 한층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여튼 무슨 방법을 통해서나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국민(國民)이 자연(自然)을 애호(愛護)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셋째로는 여러 가지 제도(制度)나 법규(法規)로서 자연(自然)을 보호(保護)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나 산림보호법(山林保護法), 국립공원법(國立公園法) 등은 이러한 방향의 좋은 실례라고 하겠으나, 이것만으로 만족한 것은 아니다. 자연보호지구(自然保護地區)내에는 적당한 수(數)의 감독하는 사람을 두어야겠는데, 그의 지식수준(知識水準)을 상당히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농학(農學), 임학(林學)이나 생물학(生物學) 분야(分野)의 대학(大學)출신을 일정한 기간 특수한 훈련(訓練)을 시킨 뒤 이러한 임무를 맡기고 있음을 본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대학(大學)이나 혹은 대학원(大學院)에다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한 학과(學科)를 설치(設置)하여, 이 방면(方面)의 참된 학자(學者)나 기술자(技術者)를 양성해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정부(政府)에서 자연보존(自然保存)에 역행하는 법규(法規)나 사업(事業)을 추진하려고 할 경우 한국자연보존협회(韓國自然保存協會) 같은 민간학술단체(民間學術團體)에서 올바르게 대정부건의(對政府建議)를 하는 것도 역시 자연보존사업(自然保存事業)의 셋째 번 방향에 든다고 하겠다.

다음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한 세계적(世界的)인 추세를 살펴본다면, 대개의 나라에는 우리 나라의 자연보존협회(自然保存協會)와 같은 민간단체(民間團體)가 있어, 위에서 설명한 세가지 방향의 자연보존사업(自然保存事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본다. 실제로 미국에 있어서의 야생생물보호위원회(野生生物保護委員會)(America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Wild Life Protection), 자연보존재단(自然保存財團)(The Conservation Foundation, U.S.)라던가 일본에 있어서의 자연보호협회(自然保護協會), 국립공원협회(國立公園協會)등을 들 수 있다. 또 국제적(國際的)으로는 이러한 단체(團體)가 규합되

어 발전을 보고 있는 국제기구(國際機構)로서 UN산하(傘下) 국제자연보존연맹(國際自然保存聯盟)(International Union of Conservation for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이 있으며, 그 본부(本部)를 중립국(中立國)인 스위스랜드의 모게스(Morges)에 두고 있다. IUCN의 기구(機構)를 보면 그 아래에 보존(保存)에 관한 위원회(委員會)(Service Commission), 교육계몽(教育啓蒙)에 관한 위원회(委員會)(Commission on Education), 국립공원(國立公園)에 관한 위원회(委員會)(Commission on National Parks), 생태(生態)에 관한 위원회(委員會)(Commission on Ecology), 법제정(法制定)에 관한 위원회(委員會)(Commission on Legislation)등의 5개의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가 있어, 세계(世界) 모든 나라의 자연보존(自然保存) 및 국립공원(國立公園) 설치(設置)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며, 그에 관해 미급한 나라에 대해 올바른 방향(方向)을 가리켜 주며, 나아가서는 이를 도와준다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6월 스위스랜드의 루선(Lucerne)에서 열린 第9次 IUCN총회(總會)에 이 사람이 경희대학교(慶喜大學校) 원병호박사(元炳皓博士)와 미국의 도움으로 참석(參席)했던 기회(機會)에 우리 자연보존협회(自然保存協會)를 IUCN의 회원단체(會員團體)로 가입(加入)을 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한 한 우리 나라만의 일이 아니고, 이미 국제적(國際的)인 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흔히 세상(世上)에서는 국립공원(國立公園)의 설치(設置)나 국토개발(國土開發)의 사업(事業)이 자연보존(自然保存)의 사업(事業)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올바른 것이 아니며, 이들 양자는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훌륭한 국립공원(國立公園)도 설치(設置)해야겠고, 또 우리 국토(國土)를 개발(開發)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事業)이지만, 이러한 사업(事業)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보존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점은 이 사람 개인의 생각에서가 아니며, 위에서 말한 IUCN의 근본 정신(精神)인 것이다.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해 현재 근본태도에 있어 각 나라의 실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본다.

그 중 하나는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자연보존(自然保存)에 대한 태도이며, 자연(自然)을 되도록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自然)을 개발하며, 이용(利用)한다는 방향이다.

둘째로는 현재 스위스랜드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와 같이 자연(自然)을 어떠한 이유로도 침범할 수 없다는 자연불가침(自然不可侵)의 방침(方針)이라고 하겠고,

셋째는 현재 일본에서 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연(自然)은 파괴가 되더라도 가능한 한도로 자연(自然)을 개발하고 이용(利用)한다는 태도라고 하겠다.

여기서 이 사람은 자연보존(自然保存)에 관해 우리 나라가 취할 태도는 위의 세가지 중에서 첫번째 방향으로, 현재 미국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政策)이랄까 방침(方針)을 쫓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방침(方針)이 선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자연보존(自然保存)을 토대로 해서 국토(國土)를 개발(開發)할 것이며, 또 국립공원(國立公園)을 설립(設立)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원만히 완수하려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 건설부(建設部), 교통부(交通部), 과학기술처(科學技術處), 산림청(山林廳)

등의 관계부처(部處)가 각각의 편벽된 생각을 버리고 서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는 점을 또한 여기서 강조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고래(古來)의 아름다운 금수강산(錦繡江山)을 되찾을 수도 있으며, 또 기존의 선진(先進)인 나라와 발을 맞추어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